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방법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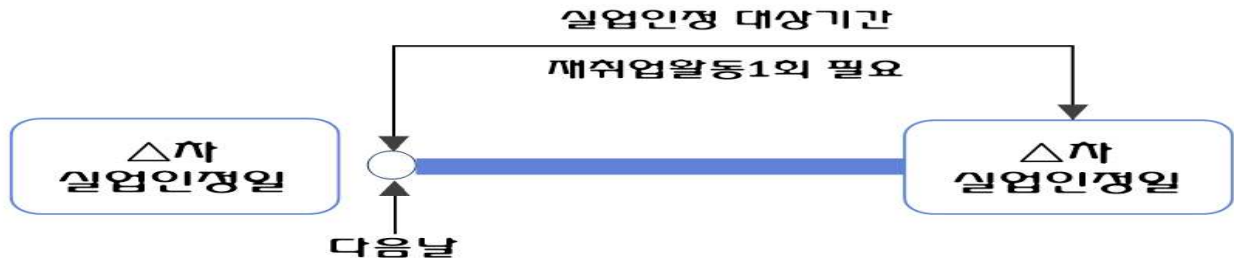
1.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구직급여를 수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개인별로 지정되는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 신청' 필요
 - ☞ 지정된 실업인정일 2일 전 휴대전화로 안내 문자가 전송되며,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시, 임시 저장 버튼을 누르고 다음단계 버튼을 누르면 다음 실업인정일 확인 가능
- '1차 실업인정일'은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다음날부터 14일째가 되는 날(1차 실업인정일에 구직급여 8일분 지급)
 - '1차 실업인정일' 다음날부터는 매 28일째 되는 날이 지정된 '실업인정일'이 됨(공휴일인 경우 변경될 수 있음)
- ※ 아래는 수급기간 120일 구직급여 수급자의 실업인정일 예시이며, 개인별 구체적인 실업인정일은 고용센터에서 안내

구분	날짜	제출서류
수급자격신청일	3.30	수급자격인정신청서
1차 실업인정일 (14일 후)	4.13	1차 실업인정일 교육자료 수강확인서
2차 실업인정일 (28일 후)	5.11	재취업활동 내역 증빙자료
3차 실업인정일 (28일 후)	6.8	
4차 실업인정일 (28일 후)	7.6	
5차 실업인정일 (28일 후)	8.3	

2. 재취업활동 의무

-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1회 이상 재취업활동을 해야함



- 실업인정 신청을 할 때 재취업활동에 대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구직급여를 수급 할 수 있음
- 1차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를 학습하고 1차 실업인정일 수강 확인서를 제출해야함

재취업활동	증빙자료	비고
워크넷 입사지원	불필요	구직활동에 해당
구인 응모	면접확인서 또는 공고+명함	구직활동에 해당
면접 응시	면접확인서	구직활동에 해당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 자체학습	1차 교육자료 수강확인서	1차 실업인정일에만 인정, 코로나-19 조치기간에만 인정
고용센터별 취업특강 자료 자체학습	학습확인서	코로나-19 조치기간에만 인정
유튜브 고용센터 취업특강 학습	학습확인서	코로나-19 조치기간에만 인정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특강	불필요	-

☞ 구체적인 재취업활동별 증빙자료는 4. 재취업활동 관련 안내 참조

3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방법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시 유의사항

- ✓ 실업인정일 당일 00:00 ~ 17:00 전송가능
- ✓ 실업인정일이 아닌 날은 전송 불가(전송 버튼의 비활성화)
- ✓ 가급적 오전에 전송요망
- ✓ 미전송 시 실업인정 불가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도 사용 가능



□ 개인서비스 → 실업인정신청 클릭

> STEP 01. 신청인 정보 확인 단계 보기

STEP 01 STEP 02 STEP 03

> 신청인

* 표시된 부분은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① 표시된 물어는 간단한 물어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실업인정

소정급여일수(남은일수)	180일(85)일	총 실업인정일수	95일
수급기간	2016/03/11 ~ 2016/09/13	수급기간 만료일	2016/09/13
구직급여액	43,415 원		

□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일액 등
확인 가능

○ 다음페이지 클릭

> STEP 02. 실업사실 확인 단계 보기

STEP 01 STEP 02 STEP 03

※ 실업급여 부정수급 경고 :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생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전액 환수
됩니다.

⚠ 근로내역발생시 반드시 신고!

> 실업사실 확인 - 근로내역 보기

※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일용근로, 피의상의 등 일시적인 소득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 근로내역		* 총 근로시간		시간
* 소득수령(예정)일		* 소득수령(예정)액		원
		※ 숫자만 입력		

> 실업사실 확인 - 산재 휴업급여 수급권 보기

※ 산재 휴업급여를 지급 받고 있거나 수급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 실업사실 확인 - 취업내역 보기

※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취업(예정)이나 개인 사업을 개시하셨습니까? ☐ 예 ☒ 아니요

□ 단기 아르바이트
일용근로 등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

○ 다음페이지 클릭

※ 구직활동이 있을 경우 체크하시고 **구직활동** (구직활동이 있을 경우)을
- 신청자 중 65세 이상 대상자는 구직활동을 **안** 입력하

⚠ 워크넷 연동-증빙자료 불필요

⚠ 구직활동 사항 기재-증빙자료 첨부

활동내역보기 구직활동확인(워크넷)

* 구직활동일자 (기간)(2016/06/21 ~ 2016/06/30)	* 사업체명	* 인사담당자(담당부서)	* 사업장 주소(E-mail)	* 전화번호
* 모집직종	* 보수수준	* 구직방법	* 응모방식	* 활동결과
		선택	선택하세요	선택하세요

구직활동확인(워크넷)

□ '구직활동'을 한 경우,
'구직활동이 있을
경우'란에 체크,
증빙자료 제출

>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안정기준 >>** **보기**

⚠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입력

※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이 있을 경우 **체크하시고** **구직** ex) 계약제, 직업훈련, 부당해고 구제자, 알자리희망 프로그램 등

과정: 세부내역(훈련기관, 과정명, 기간 등) **+** **-**

선택하세요

> 첨부구비서류

※ 구직활동내역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하지 않으면 전송이 불가함.
 ※ 첨부할 수 있는 최대파일크기는 2MB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첨부할 수 있는 확장자는 <txt, chm, tiff, jpeg, png, psd, rar, 7z, docx, ppt, pptx, xls, xlsx, hwp, pdf>만 가능합니다.

⚠ 증빙자료 첨부

구직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파일명에 특수문자
 [!, * ~ % \$ # @ ~ :]를 넣지마세
 요.)

찾아보기 **+** **-**

- '구직활동 외 활동'을
한 경우,
'구직활동 외 활동
사항'에 체크,
증빙자료 첨부

☞ 1차 실업인정일의 경우에는 반드시 '구직활동 외 활동 사항'에
체크하고 증빙자료로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 수강확인서' 제출

> 실업인정내역

실업인정일수	10 일	구직급여산출내역	43,416 * 실업인정일수 (= 근로내역)
지급액 (예정)	434,160 원	※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내역이 있을 경우 지급액은 더 작을 수 있습니다.	
다음실업인정일 (예정)	2016/07/28 (7회차)	※ 다음 실업인정일은 예정된 날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정된 송석일(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전송(전송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전송이 완료 되었는지 전송상태를 꼭 확인하신 후 인터넷 창을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 전송하시고 실업인정일 17:00가 지나면 더 이상 회수(수정)가 되지 않습니다.
 입력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전송을 원할 때는 현재까지 작성된 내용

⚠ 반드시 전송을 눌러야 신청 완료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0

수정 **삭제** **전송**

- 모두 작성하면
반드시
전송 버튼 클릭

4 재취업활동 관련 안내

1 실업급여제도 및 취업준비카드 2 실업인정 절차 3 재취업활동과 증빙자료 4 재취업활동수당 및 연금급여 5 수급사유변화사항 6 실업인정 신청 7 서류작성 8 요약 및 향후일정

▶ 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

I 적극적인 구직활동

방문 면접 우편/팩스 인터넷 입사지원

실업급여 수급자 1차 실업인정일 교육

1 실업급여제도 및 취업준비카드 2 실업인정 절차 3 재취업활동과 증빙자료 4 재취업활동수당 및 연금급여 5 수급사유변화사항 6 실업인정 신청 7 서류작성 8 요약 및 향후일정

▶ 구직활동 개관

각각의 구직활동에 적합한 증빙자료 필요

방문 면접 우편 / 팩스 인터넷 입사지원

실업급여 수급자 1차 실업인정일 교육

1 실업급여제도 및 취업준비카드 2 실업인정 절차 3 재취업활동과 증빙자료 4 재취업활동수당 및 연금급여 5 수급사유변화사항 6 실업인정 신청 7 서류작성 8 요약 및 향후일정

▶ 면접 증빙자료

1 방문 면접

증빙자료

☑️ 면접확인서 ~에서 배부

☑️ 구인공고 + 명함 명함만 제출 시 구직활동 인정 X

실업급여 수급자 1차 실업인정일 교육

1. 실업급여제도 및 취업준비카드 2. 실업인정 절차 3. 재취업활동과 증빙자료 4. 3개월 취업수당 및 연임급여 5. 수급 시 유의사항 6. 실업인정 신청 7. 서류 작성 8. 요약 및 향후 일정

우편/팩스 증빙자료

2

우편 / 팩스

➡

증빙자료

구인공고

+

등기/발송
영수증

✓ 발송인
✓ 수취인
✓ 송신일

3가지 모두 확인 가능한 영수증이어야 함

⚠ 팩스 직접 발송 시 수신리포트 제출

실업급여 수급자 1차 실업인정일 교육

1. 실업급여제도 및 취업준비카드 2. 실업인정 절차 3. 재취업활동과 증빙자료 4. 3개월 취업수당 및 연임급여 5. 수급 시 유의사항 6. 실업인정 신청 7. 서류 작성 8. 요약 및 향후 일정

인터넷 입사지원 종류

3

인터넷 입사지원

➡

1 워크넷 (workgo.kr)

별도 증빙자료 불필요
(※구직활동내역 조회)

2 취업포탈 사이트 (saramin JOBKOREA)

• 잡코리아, 사람인 등
• 구인공고 + 취업활동증명서

3 E-mail 입사지원

구인공고 + 보낸편지함

4 홈페이지 입사지원

구인공고 + 지원완료화면
(지원일 확인)

실업급여 수급자 1차 실업인정일 교육

1. 실업급여제도 및 취업준비카드 2. 실업인정 절차 3. 재취업활동과 증빙자료 4. 3개월 취업수당 및 연임급여 5. 수급 시 유의사항 6. 실업인정 신청 7. 서류 작성 8. 요약 및 향후 일정

3-1 워크넷으로 입사지원 시

증빙자료 ➡ ☒ 불필요 - 구직활동내역조회

실업급여 수급자 1차 실업인정일 교육

➤ 3-1. 워크넷으로 입사지원 시

● 워크넷 구직활동 증빙자료에 대한 추가 안내 ●

☒ 별도 증빙자료 불필요

☒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모니터링 강화

-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 구직활동에 대해 필수 모니터링 진행
-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2회 이상 확인 시 입사지원 제한

☒ 워크넷 구직정보 비공개 전환

- 비공개가 원칙이나 수급자 동의 및 고용센터 서비스 지원을 원한다면 공개
- 공개 전환 시 워크넷 상의 모든 구직활동이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

➤ 3-2. 취업포털사이트에서 입사지원 시

증빙자료 >> ☒ 구인공고 + 취업활동증명서

➤ 3-2. 취업포털사이트에서 입사지원 시



3-3. e-mail로 입사지원 시



증빙자료

- 구인공고 + 보낸편지함
- 채용담당자 이메일 = 받는 사람 이메일 일치 증명
- 메일 보낸 날짜(구직활동일자) 증명

3-4. 채용기관 홈페이지로 입사지원 시



증빙자료

- 구인공고 + 입사지원 완료화면
- 컴퓨터 화면 상 시계-달력, 윈도우 작업표시줄 등을 활용하여 입사지원일(구직활동일자)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함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증빙자료

- 직업훈련 수강증명서 + 출석부 사본
- 특강/프로그램 참가 수료증
- 자영업계획서 + 자영업활동내역서 (순차제출)
- 해외취업활동계획서 + 해외취업활동내역서(순차제출)

1

직업 훈련

2

취업특강
교육자료
자체학습

3

자영업
준비활동

4

해외취업

1. 실업급여제도 및 취업지원제도 2. 실업인정 절차 3. **재취업활동과 증빙자료** 4. 3개월 취업수당 및 연금급여 5. 수급시 유의사항 6. 실업인정 신청 7. 서류 작성 8. 요약 및 향후 일정

» 직업훈련 증빙자료

1

직업 훈련

»

증빙자료

+

직업훈련 수강증명서 **출석부 사본**

! 4주 단위로 30시간 이상 수강한 경우
구직활동 2건 면제

실업급여 수급자 1차 실업인정 및 교육

1. 실업급여제도 및 취업지원제도 2. 실업인정 절차 3. **재취업활동과 증빙자료** 4. 3개월 취업수당 및 연금급여 5. 수급시 유의사항 6. 실업인정 신청 7. 서류 작성 8. 요약 및 향후 일정

» 특강/프로그램 증빙자료

2

취업특강 교육자료 학습

»

증빙자료

»

학습 확인서

유튜브 고용센터 취업특강

- 유튜브 '고용노동부' 채널 또는 '고용센터 취업특강' 채널 강의 3개 과정 (1개 과정당 4개 동영상) 중 1개 과정 시청
- 취업특강 1개 과정 시청은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
- 해당 취업특강의 학습확인서를 작성하여 전송

고용센터 취업특강 교육자료

- 안내서의 '고용센터 취업특강 교육자료' 자체 학습
- 교육자료 1개 과정 시청은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
- 교육자료 학습 후 학습확인서를 작성하여 전송

실업급여 수급자 1차 실업인정 및 교육

1. 실업급여제도 및 취업지원제도 2. 실업인정 절차 3. **재취업활동과 증빙자료** 4. 3개월 취업수당 및 연금급여 5. 수급시 유의사항 6. 실업인정 신청 7. 서류 작성 8. 요약 및 향후 일정

» 온라인 특강 프로그램 수강

»

온라인 특강 프로그램 수강안내

서류전형 준비, 면접역량 등 구직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지원 특강 프로그램 온라인으로 수강 가능

! 필수방문회차에는 특강신청 불가

1.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 접속
2.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서 상 '취업특강 바로가기' 선택
3. 수강을 원하는 취업특강 프로그램의 차시 선택
4. 취업특강 프로그램 수강

실업급여 수급자 1차 실업인정 및 교육

1. 실업급여제도 및 취업준비카드 2. 실업인정 절차 3. 재취업활동과 증빙자료 4. 중소기업 취업수당 및 연임급여 5. 수급 시 유의사항 6. 실업인정 신청 7. 서류 작성 8. 요약 및 향후알림

자영업 증빙자료

3

자영업 준비활동

➡

증빙자료

자영업 계획서

+

자영업 활동 내역서
(순차제출)

실업급여 수급자 1차 실업인정일 교육

1. 실업급여제도 및 취업준비카드 2. 실업인정 절차 3. 재취업활동과 증빙자료 4. 중소기업 취업수당 및 연임급여 5. 수급 시 유의사항 6. 실업인정 신청 7. 서류 작성 8. 요약 및 향후알림

해외취업 증빙자료

4

해외취업

➡

증빙자료

해외취업 활동계획서

+

해외취업 활동 내역서
(순차제출)

실업급여 수급자 1차 실업인정일 교육

1. 실업급여제도 및 취업준비카드 2. 실업인정 절차 3. 재취업활동과 증빙자료 4. 중소기업 취업수당 및 연임급여 5. 수급 시 유의사항 6. 실업인정 신청 7. 서류 작성 8. 요약 및 향후알림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의 예시

- 1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 문의하여 본인이 수첩에 기재한 경우
- 2 동일업체 중복지원
- 3 이미 구인이 종료된 업체에 입사지원
- 4 구인 계획이 없는 사업장의 명함 또는 전단지를 제출한 경우
- 5 사업 등을 하는 친인척, 친구 등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 6 구인공고의 희망직종·경력·학력·자격증 필수 여부 등과 비매칭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 1차 실업인정일 교육